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7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박충권·백종헌·김정재

이인선 · 김위상 · 박성훈

서지영 · 엄태영 · 김태호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 또는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지 원사업
-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 3.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 업
-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	①		
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			
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			
지 아니하도록 <u>지원사업을 할</u>	<u>다음 각 호의 지원사</u>		
<u>수 있다</u> .	업을 하여야 한다.		
<u><신 설></u>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		
	운영 지원사업		
<u><신 설></u>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 지원사업		
<u><신 설></u>	3.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		
	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u><신 설></u>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u>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u>		
	<u>개선사업</u>		
<u><신 설></u>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		
	<u>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